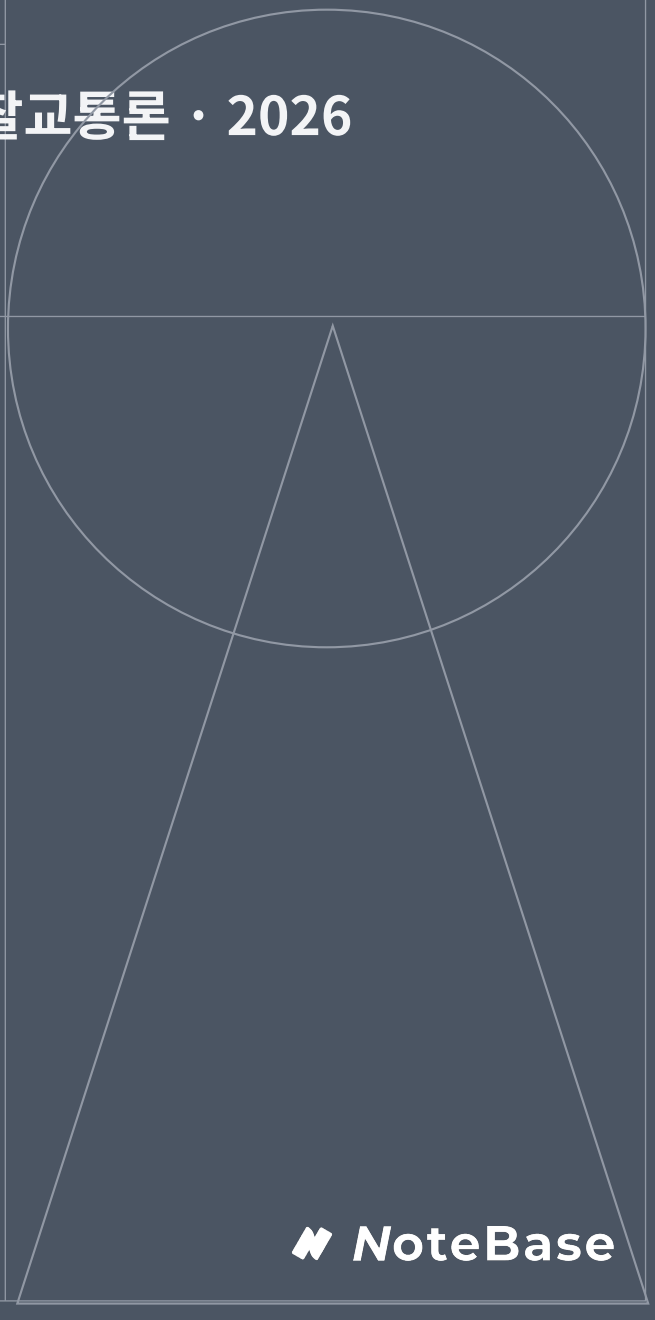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6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6

공무원/경찰/경력채용 · 경찰교통론 · 2026

문 1. 「교통사고 조사규칙」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상자의 구호 및 사체의 처리
②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③ 사고확대방지와 교통소통의 회복
④ 형사책임 및 민사책임의 규명

정답 4번

②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고방지 대책을 위한 정확한 원인조사

④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에 포함되는 것은 **형사책임의 규명**이다. **민사책임의 규명은 규정된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7조(사고조사의 목적) 교통사고 조사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형사책임의 규명

NoteBase

문 2.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동이륜평행차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③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하면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④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법정 기준을 충족한 전동이륜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자전거등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2. 전동이륜평행차

②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2명**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2.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NoteBase

③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자전거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때 정지한 차에서 승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NoteBase

문 3.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혈액 공급차량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통행할 수 있다.

②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교통단속용 경찰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도주자의 체포를 위해 교도소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소방차 운전자는 화재 예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없다.

정답 1번

①

혈액 공급차량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면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 혈액 공급차량

도로교통법 제16조(노면전차 전용로의 설치 등)
②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야 하며, 차마의 운전자는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차로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면전차 전용차로에서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NoteBase

②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교통단속용 경찰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긴급자동차 운전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의 예외**이므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2026.9.29>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10. 운전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NoteBase

③

이 형 감면 특례는 소방차·구급차·혈액 공급차량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찰용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도주자 체포용 교도소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이지만 이 특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 · 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2026.9.29>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 · 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 · 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NoteBase

④

소방차가 화재 예방 등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⑥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 ·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NoteBase

문 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운전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제1종 소형면허로 배기량 800시시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견인차면허로 총중량 3.5톤 이하의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제1종 보통연습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④ 제1종 대형면허로 트럭지게차를 운전할 수 없다.

정답 3번

①

제1종 소형면허로는 3륜화물자동차·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배기량 800시시의 이륜자동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125시시 이하 범위를 벗어나므로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하다.

https://drive.google.com/file/d/11RGqMkYc5gNSoYjyhvn9hvZIiq2gUT5s/view?usp=drivesdk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https://drive.google.com/file/d/1-G97_868B9--C3ooii4lrB1w9ZcSFjle/view?usp=drivesdk

②

소형견인차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구난차면허가 필요**하다.

https://drive.google.com/file/d/17XXEKFzLIj6IuCQVNFTqDurBptLLgju8/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wifl6x_Ndj1KuMjmHRR-Kah8YxCP3q8N/view?usp=drivesdk

NoteBase

③

제1종 보통연습면허의 운전 범위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https://drive.google.com/file/d/1_Hn917cXAbMIA6naLyanC2ofLkwd-eu8/view?usp=drivesdk

④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에는 **트럭지게차가 포함**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8qdNWunQErkL5U8j7Fz6T7oEoVa-Hl11/view?usp=drivesdk

NoteBase

문 5.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적재물로 인해 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에 관한 규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차의 너비가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차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통행할 수 있다.

②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운전면허, 초과내용, 운행기간, 운행구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신청인의 자동차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차를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 폭의 양 끝에 적색 등화장치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차로폭 초과차는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신청서에는 **운전면허의 종류·번호, 초과내용, 운행기간, 운행구간** 등을 기재한다. 운행구간은 출발지·경유지·목적지로 구분하여 적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https://drive.google.com/file/d/1AFJ3lRqvshUjLmATzd_BMSVTN_pMkYZe/view?usp=drivesdk

NoteBase

③

신청서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7조(차로의 너비보다 넓은 차의 통행허가)
①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행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차로폭초과차 통행허가신청서에 의한다. 이 경우 관할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0.9.10>

④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아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기준을 넘는 승차 및 적재의 허가신청)
③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의 적재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길이 또는 폭의 양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으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다만, 밤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한다.

NoteBase

문 6.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전용차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7명이 승차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③ 어린이 3명과 보호자 1명이 승차한 9인승 어린이통학버스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④ 승객 3명이 승차한 45인승 전세버스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9인승 이상인 승합자동차 중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이 승차해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7명이 탄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이 기준을 충족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kKIV5kX6W8f3q54fW3GbH-ycRQ_nmsno/view?usp=drivesdk

③

9인승 어린이통학버스도 고속도로에서는 **6명 이상이 승차해야**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어린이 3명과 보호자 1명에 운전자 1명을 별도로 포함하더라도 5명으로, 이 기준에 미달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tt0ZTJdex8Mm0IPgJyQasyp44nIvKKg/view?usp=drivesdk

④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는 6명 이상 승차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45인승 전세버스는 승객이 3명이어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vDx89vZ7EDMuPOCUGHF5KzaIJAtVZfxS/view?usp=drivesdk

NoteBase

문 7.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교통사고 조사규칙」상 “교통”: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상 “사고기록장치”: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사고 영상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
㉣ 「도로교통법」상 “운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2번

㉠

교통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운반하는 등 **차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통"이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등 차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ㄴ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나 승객의 조작 없이 스스로 운행할 수 있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2026.2.27, 2026.6.16>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ㄷ

사고기록장치는 충돌 등 법정 사고 전후 일정 시간의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나 기능**이다. 저장 대상을 사고 영상 정보로 설명한 부분이 잘못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2026.2.27, 2026.6.16>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NoteBase

㉣

선지의 설명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정의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조종이나 자율주행시스템 사용도 포함한다. 음주운전 등 법정 일부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2018.3.27, 2020.5.26, 2020.6.9, 2020.12.22, 2021.10.19, 2022.1.11, 2023.4.18, 2023.10.24, 2025.12.30>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 · 제44조 · 제45조 · 제54조제1항 · 제148조 · 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6, 2013.8.6, 2016.3.22, 2020.4.7, 2021.1.26>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NoteBase

문 8. 「도로교통법」상 노인 교통안전 및 운전면허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인은 보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으로 서행하며 통행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립공원·도립공원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인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0세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번

①

노인은 자전거를 운전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으며,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면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원동기를 끄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이 특례에서 제외**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0.6.9>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NoteBase

②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에 포함된다. 시장등은 노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3.27, 2021.10.19, 2023.1.3>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8, 2016.5.29, 2025.10.1, 2026.7.7>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③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도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이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2.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④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의 의무 대상은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이며,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⑤ 7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3.27>
1.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9.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 주·정차 및 주차 위반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택시 운전자는 승객의 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7미터 지점에 정차할 수 있다.

② 화물차 운전자는 물건의 하역을 위하여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7미터 지점에 주차할 수 없다.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에 관한 통지사항에는 통지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고 안내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는 원칙적으로 정차·주차가 금지**된다. 승객 승하차를 위한 예외는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상의 정류장에서 정차·주차하는 버스여객자동차**에 적용되므로, 택시는 7미터 지점에 정차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2.9, 2020.10.20, 2020.12.22, 2021.11.30>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가 주차금지 범위이므로, 7미터 지점은 이 금지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NoteBase

③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경찰서장·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의 보관장소 등을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 ·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④

통지사항에는 **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주차위반차의 견인 ·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등)
③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지한 날부터 1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

NoteBase

문 1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신호등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차량 신호등은 교통사고가 연간 3회 이상 발생한 장소에서 교통신호등의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② 경보형 경보등은 통행의 우선순위가 필요한 교차로에서 폭이 넓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은 등 통행 우선이 필요한 도로에는 적색으로 설치한다.

③ 가변등은 고속도로등에서 차량정체 시 신호기 표시에 따라 갓길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입구, 중간 및 출구에 설치한다.

④ 신호등의 광도 및 휘도는 그 설치 기준의 최소 60퍼센트 이상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3번

①

교통사고 발생 횟수에 따른 차량 신호등 설치기준은 **연간 5회 이상**이며, 신호등 설치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bmCsl_cLP2Zk_bhw5Pd1Jt-b0eno-QQI/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oXLYTKnKeHUas9m1q55eWANcOWC5RRmm/view?usp=drivesdk

②

폭이 넓거나 차량 통행량이 많아 통행 우선이 필요한 도로에는 **황색** 경보등을 설치한다. **적색**은 폭이 좁거나 차량 통행이 적어 다른 도로에 통행을 양보해야 하는 도로에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50gmCzcnXdRBs2Lzn3jVExFf8bXwBro/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SmhQuGyAM_rIZj4FdPxBQe4151AgZEPn/view?usp=drivesdk

③

가변등은 고속도로등에서 차량정체 시 신호기 표시에 따라 갓길로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의 **입구·중간·출구**에 설치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jiLqOt2uu7cGlY00NK4F_B79ffLo_5CP/view?usp=drivesdk

https://drive.google.com/file/d/1jtyGLPbzTZpe1uRJ8xDYhcrv70jupSxr/view?usp=drivesdk

NoteBase

④

설치된 신호등의 광도와 휘도는 **광도 및 휘도 최소기준의 70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 · 관리기준(제7조제1항 관련)
3. 신호등의 관리기준 설치된 신호등의 광도 및 휘도는 제2호에 따른 광도 및 휘도 최소기준의 70 퍼센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문 11.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도로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에서 공작물을 신설하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도로공사신고서에 공사 현장 위치도와 세부 도면, 도로점용 허가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도로관리청이 고속도로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대한 통보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70조(도로의 점용허가 등에 관한 통보 등)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8, 2014.1.14>
1.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②

공사시행자는 도로공사신고서에 **공사 현장 위치도와 세부 도면, 도로점용 허가증 등 공사 시행의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2조(도로공사신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도로공사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4.1.31>
2. 공사 현장 위치도 및 세부 도면
3. 도로점용 허가증 등 도로공사 시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

NoteBase

③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안전과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면,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사로 훼손한 교통안전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3조(교통안전시설의 원상회복) 법 제69조제6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4.21>

NoteBase

문 1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상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는 제외)

㉠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중요행사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① ㉠㉡㉢
② ㉠㉢㉣
③ ㉡㉣㉤
④ ㉢㉣㉤

정답 2번

㉠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NoteBase

ㄴ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 · 폐지에 관한 사항

ㄷ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 안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 ·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ㄹ

중요행사로 교통안전시설을 **일시적이고 긴급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으면 사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 · 민원제기 · 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 · 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NoteBase

ⓞ

통행의 금지·제한과 차로의 구획·폐지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의를 생략할 수 없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 · 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에서는 관할 시 · 도경찰청에, 시 · 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 · 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 운영한다. 다만, 시 · 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 · 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에도 시 · 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 · 폐지에 관한 사항

NoteBase

문 13.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 중 경찰서장이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의 동승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②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③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고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④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정답 1번

①

질문 불응과 관련하여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것은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이다. 동승자 확인을 위한 진술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와 구별된다.

도로교통법 제162조(통칙)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②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3.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oteBase

③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2025. 2. 11. 개정) 제18조
제18조(즉결심판 청구 등) ①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한다.
1.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3. 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4. 통고서를 받고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④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①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 · 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
1.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NoteBase

문 14.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의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 임장 후 각자 맡은 임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출동 전에 반드시 사전 임무분담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호 및 후송은 경찰의 주관 업무이므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면 경찰이 구급대원들의 인명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한다.

③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등 화재 징후가 있거나 화재 초기단계인 경우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④ 출동 중 추가로 확인되는 현장 상황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에 실시간 전파한다.

정답 2번

①

현장 도착 즉시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여 대응의 중복이나 공백을 막도록 **출동 전에 임무를 분담**한다.

②

긴급구호·후송은 **소방이 주관**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하면 경찰은 인명구조활동을 직접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협조**한다.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구조 · 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 · 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1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 · 군 ·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확대를 막기 위해 차량의 화재 징후나 초기 화재에는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한다. 이때 경찰관과 주변 사람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출동 중 새로 확인한 현장 상황은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 치안종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파**하여 구조·구급과 경찰의 대응이 신속히 조정되도록 한다.

NoteBase

문 15. 다음 사례에서 운전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 결격기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운전자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보행자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금고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① 1년

② 2년

③ 4년

④ 5년

정답 4번

NoteBase

②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A는 금고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벌금 미만의 형 확정 등에 따른 결격기간 적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 · 제2항, 제45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 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 나목 · 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NoteBase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 ·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④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 A는 금고 2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벌금 미만의 형 확정 등에 따른 결격기간 적용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8.11, 2018.12.24, 2020.6.9, 2021.1.12, 2021.10.19, 2022.1.11, 2023.10.24, 2024.12.3, 2025.4.1>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 · 제2항, 제45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 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 나목 · 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NoteBase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 · 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NoteBase

문 16.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

③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 행위 등이 작업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 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행위를 '차의 교통'으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번

①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해야 하며,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은 예외이다.

따라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17724 판결)

NoteBase

②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도 이를 지킬 것으로 신뢰할 수 있다. **횡단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는 등 횡단을 예상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는 차량까지 미리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1)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안전지대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그 부근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자기 차량의 진로 앞에 달려드는 일은 없으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안전지대의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위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③

과속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 발견 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④

건설기계를 이동시키기 위한 운전은 그 목적·경위·장소와 관계없이 '차의 교통'에 해당한다. 따라서 **작업 수행 중이거나 작업에 수반된 이동이라도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대상**이므로, 작업과 관련된 이동이라는 이유로 특례법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272 판결 등 참조),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이상 그 목적, 동기, 경위, 장소 등을 불문한다.
따라서 건설기계 운전자가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해서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행위 또는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 등의 죄를 범하였다면, 여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건설기계의 이동을 위한 운전행위 등이 작업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졌거나 작업수행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5542 판결)

NoteBase

문 1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제28조의2에 따른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방법 및 절차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방법은 크게 호흡조사와 혈액채취로 구분된다.

② 혈액 시료는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채취해야 한다.

③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정답 1번

①

약물 복용 여부는 호흡조사가 아니라 **보행·서기 등 상태 평가, 타액 등의 간이시약검사 및 혈액·소변 등의 성분 감정**으로 측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보행 · 서기 등 상태 평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직선보행 · 회전 평가 및 한 발 서기 평가 등 운동능력을 검사하여 약물 복용여부를 평가하는 방법
2. 간이시약검사: 타액 등을 채취하여 간이 시약기로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혈액 채취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혈액이나 소변 등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 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성분 감정을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방법(이하 "혈액등검사"라 한다)을 말한다.

②

혈액 시료는 **가까운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취**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나. 가까운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시료를 채취해야 하며, 채혈할 때에는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할 것. 다만, 소변채취의 경우 운전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 외에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서 할 수 있다.

NoteBase

③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3. 혈액등검사로 측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
다. 채취한 혈액이나 소변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할 것

④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물 복용 여부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NoteBase

문 1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평가방법에 따른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②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③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운영하여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정답 4번

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설치하거나 이전한다. 설치 장소는 **위반행위 유형과 평가 방법별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거나 다른 지점에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규 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하되, 위반행위의 유형과 나목에 따른 설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해야 한다.

NoteBase

②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구역·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도 함께 부착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단속 지점이나 단속구간의 위치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구역 또는 구간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보조표지를 함께 부착해야 한다.

③

신설 도로의 장비 설치 시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2)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신설 도로에 설치한 장비의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시점은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때**이다. 2년이 아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4. 7. 31.>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 · 관리기준(제8조의2 관련)
1. 설치기준
가. 일반기준
2) 신설 도로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계시간교통량, 제한속도, 설계속도, 차로 수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운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치 적정 여부와 이전설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NoteBase

문 19. 「교통사고 조사규칙」상 현장도면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면도뿐 아니라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입체도를 작성한 경우 방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에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현장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현장도면은 **사실 인정에 중요한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① 교통조사관은 교통사고 현장도면을 작성할 때에는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②

조사에 필요하면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지만, **입체도에도 반드시 방위를 표시**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③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평면도뿐 아니라 입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교통사고보고서에 작성하는 도면은 **400분의 1의 축적이 원칙**이다. 상황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나 **축적비율과 방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쪽 앞면 교통사고보고서(2) 서식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400분의 1의 축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축적비율을 조정하되 반드시 축적비율 및 방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작성자는 현장도면에 **계급·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 간인**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14조(현장도면 작성)
⑧ 현장 도면에는 작성자가 계급,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현장도면과 조서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0.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하여 최초로 갱신하려는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② 군 복무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③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④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1번

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제1종 보통면허 취득자의 최초 갱신기간은 시험 합격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이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전에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날 이후 첫 갱신에 한하여 종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2018.3.27, 2020.12.22, 2025.8.14>
1.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 이내
도로교통법 부칙 <제21016호,2025.8.14>
제2조(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 법 시행 후 처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 하나에 따른다.
2. 종전의 제8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NoteBase

②

군 복무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미리 받거나 연기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

③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가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3.27>
2. 제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

④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87조(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정기 적성검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定期) 적성검사(適性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NoteBase